

호 외



2011. 11. 30(수)

시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.

발행자 : 군 산 시 장

발행처 : 공보담당관 (☎450-4221)

【조 례】

군산시 조례 제1006호

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1

군산시 조례 제1007호

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

5

회
람

군 산 시